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30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437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
원고, 항소인	재단법인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	소송대리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8구합60205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9. 11.
판 결 선 고	2019. 11. 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30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. 1. 4. 한 제1심 판결문 [별지 1]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 등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(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, '3. 결론' 부분은 제외)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수정하는 부분

○ 10쪽 6행의 "없다)."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【 결국 원고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. 】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동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30

판사 박재우

판사 박해빈